

문서번호 : 본점-210106-001

일 자 : 2021.01.06.

직인생략

수 신 : 고객사 대표님

참 조 : 세무업무 담당자님

제 목 : 연말정산 안내

고객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서류로 시작해 서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내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 부탁드립니다. 서류는 대상자별로 꼭 작성하시어 별첨1, 2 작성서류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 1월 15일 이후부터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

2. 서류제출

(1) 제출기한 : 2월 10일

(2) 제출서류

- ① 연말정산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홈택스 조회자료 등] (P.7 참고)
- ② 소득공제신고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작성] (별첨1)
- ③ <Self-Check>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작성] (별첨2)

(3) 제출방법

1)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On-Line 제출)

☆☆ 추천 ☆☆

①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서

☞ 각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제출버튼 클릭으로 연말정산 서류 전송이 가능. 즉, 별도의 자료수합이 필요없음.

② <Self-Check>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및 기타서류

☞ 각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 수합 제출 (PDF파일로 당사 전송)

2) 직접 제출 (우편 또는 파일 수합 제출)

① 연말정산 제출서류 등

☞ 각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제출. 이후, 회사에서 수합하여 송부.

② 소득공제신고서

☞ 안내문에 첨부된 신고서(별첨1)를 직접 작성 후 회사에서 수합하여 송부.

③ <Self-Check>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 안내문에 첨부된 Self-Check(별첨2)를 직접 작성 후 회사에서 수합하여 송부.

3. 유의사항

1)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 홈텍스를 통한 On-Line 간편제출방법은 납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용방법은 안내문에 실려 있으니, 가급적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을 이용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월별사용내역 조회 제출

: 2020년은 월별 소득공제율이 다르기에 반드시 월별내역을 제출하셔야 80%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로 조회 Check)

2) 홈텍스 미조회 자료의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별도의 공제대상 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예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 중·고생 교복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납부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부증명서, 학점인정 교육비납부증명서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 명세

△ 기부금 영수증

△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암 환자나 난치성 질환, 중풍, 치매 등의 상황에 해당 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인 경우는 확인서 불필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소득공제신고서(2020년 귀속분)

별첨2. <Self-Check>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1. 01. 15. 이후 조회가능)

-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자료는 요건 충족되는 경우 불러오기를 이용해 출력

구분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신용카드 공제	○	×
의료비 공제	×	×
기부금 공제	○	×
교육비 공제	○	×
보험료 공제	○	○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

구분	제공자료	수집처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토지주택공사 등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신용카드사 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회사 등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등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자료는 미리 준비

-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 △ 중·고생 교복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납부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부증명서, 학점인정 교육비납부증명서
-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 명세
- △ 기부금 영수증
- △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 △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암 환자나 난치성 질환, 중풍, 치매 등의 상황에 해당 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인 경우는 확인서 불필요)

4. 모바일 서비스 확대

-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 가능
-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 가능
-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 가능

5.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챗봇 상담 서비스’ 를 도입해 2021년 1월 15일부터 운영 예정
- 국세청 유튜브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시리즈 제작 및 공개
-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연말정산 상담 전화 킷메뉴(21년 1월 4일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 ⇨ 5 ⇨ 1(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 ☞ (국번 없이) 126 ⇨ 5 ⇨ 2(세법 상담)
 - ☞ (국번 없이) 126 ⇨ 9 ⇨ 1(ARS 세법안내, 18시 이후 이용)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이용 안내

1. 회사의 근로자 인적사항 사전등록

1) 필수사항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 회사에서 근로자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전등록 방법

① 편리한 연말정산 접속



② 세무대리인 연말정산 수입동의

☞ 종전의 세무대리인 수입동의와 별도로 반드시 연말정산 수입동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 (On-line 제출)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서비스 종료일
- 3.10일

※ 공제신고서 관리 서비스는 6.30까지 제공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공제신고서 관리
-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유형별 서비스 이용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아래 유형 중 선택)

유형1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에 활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 → 공제신고서 관리 (간소화자료 출력·다운로드)

유형2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무속서류 및 간소화자료 포함)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에 활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안내 → 공제신고서 관리 (공제신고서 등 출력·다운로드)

유형3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홈텍스를 통해 진행 (20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이용 가능)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안내 → 공제신고서 관리 (공제신고서 검증)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생성) → 지급명세서 보기 (지급명세서 수정 및 제출)


유형4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연말정산을 위임하는 회사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동의(해지)

서비스 내용



③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접속 (유형2 선택, 유형4 선택 시 불필요)



간편 제출 (On-line 제출)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6:00 ~ 다음날 01:00

서비스 종료일
· 3.10일

※ 공제신고서 관리 서비스는 6.30까지 제공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공제신고서 관리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유형별 서비스 이용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아래 유형 중 선택)

유형1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에 활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 → 공제신고서 관리 (간소화자료 출력 · 다운로드)

유형2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부속 서류 및 간소화자료 포함)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에 활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작성 · 제출 안내 → 공제신고서 관리 (공제신고서 등 출력 · 다운로드)

유형3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홈택스를 통해 진행 (20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이용 가능)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작성 · 제출 안내 → 공제신고서 관리 (공제신고서 검증)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지급명세서, 가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생성) → 지급명세서 보기 (지급명세서 수정 및 제출)

서비스 내용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져 선택항목(총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까지 입력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역설일괄등록」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회사는 비과세 등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는 역설로 작성하면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개별 직접 입력 발행)

④ 필수항목 입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기타정보 입력 불필요)

☞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은 수입동의 시, 세무대리인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유형4)

근로자기초자료등록 공제신고서관리 지급명세서작성관리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에 선택항목(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일괄징수기부금)을 모두 등록하면 소속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역설일괄등록**」를 클릭하면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근로자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오류 검증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산과부하를 고려하여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하고(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가끔씩 **1월말 이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수입업체 선택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226-81-52322	상호	세무법인 현인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226-81-52322	상호	세무법인 현인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부	저장	

제출유형구분

근로자에게 제출 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공제신고서 제출 간소화자료 제출 저장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역설일괄등록

근로자성명 검색 추가 삭제 전체 삭제 명세내려받기 10개씩 보기 확인

필수항목		선택항목					소득명세 상세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일괄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입력 여부	관리
<input type="checkbox"/>		0	0	0	0	0	0	Y	상세입력

1 / 총1건(1/1)

해당 시스템은 등록 시, 근로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연말정산자료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종전과 달리 회사에서 일일이 수합하여 발송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시스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서류는 회사수합 제출필요. 안내문 P. 1 참조)



2.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1) 1단계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 가족들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되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의 동의방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단계 : 공제신고서 작성 및 On-Line 제출

- ☞ 공제자료 조회확인 및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으로 연말정산이 종결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제출하기 하단의 근로자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추가.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근로소득공제가 2,000만원을 한도로 적용. 20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 2020.1.1. 이후부터 적용
(공제대상 : 7세이상 ~ 20세이하의 자녀만 공제적용대상)
4.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 급여액 1.2억원)이하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를 400만원(700만원) →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는 3월 사용분 30%, 4~7월 사용분은 80%, 8~12월 사용분은 15% 적용
 - 현금영수증 등은 3월 사용분 60%, 4~7월 사용분은 80%, 8~12월 사용분은 30% 적용
 - 전통시장 등은 3월 사용분 80%, 4~7월 사용분은 80%, 8~12월 사용분은 40% 적용
6.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2020년 귀속분에 한하여 30만원 상향
7.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로 변경.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제출서류

서류명	대상자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입사 근로자 ◆ 공제대상가족 변동이 있는자 ◆ 부녀자·한부모 공제를 받을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상이)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② 상이자, 청각, 시각 장애인 ③ 기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한의원포함) 읍, 면, 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입양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입양자에대해 기본공제를 받을자 	동사무소·입양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납입증명 또는 ●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전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상해, 손해보험, 생명공제등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보험회사, 농, 축, 수협, 우체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 장애인보장구 구입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지급한 근로자 	의료기관, 약국,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자 	해당 보험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비용납입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공납금 납입영수증 ●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초·중·고교·대학에 재학중인 경우(근로자 본인은 대학원에 재학중인자)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입금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최초공제신청시(취득주택등기부등본) ◆ 월세소득공제등 받을자(7천만원이하급여자) 	동사무소·등기소· 해당금융기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납입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불우이웃돕기등 기부금 지출한자, 정치자금기부금은 10/11(10만원이내) 세액공제 	기부금 접수기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납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근로자(00.12.31이전) 연금저축, 퇴직연금 근로자(01.1.10이후) 	저축취급기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등 공제부금 가입자 	중소기업중앙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투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합(벤처기업)등에 출자한 근로 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 대상자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직불,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금액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직불)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신용카드업자, 금융기관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 미분양 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95.11.1-97.12.31 미분양주택 취득자) 	지자체장, 금융기관 등기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근로자 	해당 금융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사업주와 근로자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해당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퇴사, 둘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자 	전근무지, 종된근무지



소득공제 신고서 (회신용)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이중근로/재취업 여부	(0 , X)			
				이중근로 또는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중)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요망.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구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제여부	
	본인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배우자	배우자				
			부				
			모				
			자녀				
			자녀				
			자녀				
			형제 자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자녀공제는 2000.1.1.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기본공제자로 함							
<p>※ 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u>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및 양도, 퇴직소득 포함)</u>이 100만원(단, 순수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가능)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의 경우 남,녀 모두 60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3. 부모의 경우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자인 경우엔 다른 자녀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 중 소득금액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 됩니다. 5.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2000.1.1)이후 출생자만이 해당됩니다. 6.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한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2000.1.1이후 출생자 또는 1960.12.31.일 이전 출생자가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7. 인적공제 대상자 란은 꼭 근로자 본인이 기재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파악하여 해당시 공제여부에 0를 기재하십시오) 							



[별첨2]

<Self-Check>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회신용)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예, 아니오에 란에 간단하게 ○로 기입해 주시길 바라고 확인란에 확인자를 기입하고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NO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신가요?														
2	2020년 12월 31일 현재 법적배우자가 있으신가요?														
3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으신가요?														
4	<p>3번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고 다음의 항목에 대한 추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u>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은 경우 확인이 가능하오니 관련 영수증을 제출바라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60세이상(1960.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00.1.1.이후 출생),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적용 가능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양가족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관계</th> <th rowspan="2">이름</th> <th rowspan="2">주민등록번호</th> <th colspan="2">소득금액 요건*1을 충족합니까?</th> </tr> <tr> <th>예</th> <th>아니오</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height: 50px;">별첨 1번 서식으로 대체</td> </tr> </tbody> </table> <p>*1.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총 급여액 500만원)임</p>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요건*1을 충족합니까?		예	아니오	별첨 1번 서식으로 대체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요건*1을 충족합니까?									
		예	아니오												
별첨 1번 서식으로 대체															
5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6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까?														
7	부양가족 중 기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권자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NO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8	부양가족 중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위탁아동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9	<p>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자료가 있습니까?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에 동의를 한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가 출력 가능하니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바라며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도 공제가 가능하오니 해당 되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관계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4번 항목에서 기재한 경우라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28 618 1197 842"> <thead> <tr> <th data-bbox="228 618 496 696">관계</th> <th data-bbox="496 618 772 696">이름</th> <th data-bbox="772 618 1197 696">주민등록번호</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data-bbox="228 696 1197 842" style="text-align: center;">별첨 1번 서식으로 대체</td> </tr> </tbody> </table>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별첨 1번 서식으로 대체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별첨 1번 서식으로 대체									
10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 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u>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제공기간 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 한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했습니까?</u>								
11	<p>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p> <p>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가능하고,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함)</p> <p>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p> <p>③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입니까?</p> <p>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p>								
12	<p>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p> <p>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연도중 무주택이어야 함)</p> <p>② 2021.2.28.까지 금융기관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p> <p>※ 참고로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하고 당첨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함.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오른쪽 란에 '공제불가'라고 기입바람</p>								



NO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3	<p>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p> <p>①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하고, 세대주가 모든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함)</p> <p>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p> <p>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까?</p> <p>④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이자^{*1}를 지급하고 있습니까?</p> <p>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하신 경우에 해당 합니까?</p>		
14	<p>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p> <p>① 주택의 명목과 차입금의 명목이 근로자 본인 것입니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시 등의 요건 충족시 세대원도 공제가가능함)</p> <p>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입니까?</p> <p>③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p> <p>④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까?(2014년 이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여부 상관없음)</p> <p>⑤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액을 말함)가 5억원 이하입니까? ☞ 2014년~2018년에 차입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4억원, 2013년 이전 차입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입니까?</p> <p>⑥ 2006.1.1.~2013.12.31.까지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이후 세대 전원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2014.1.1.이후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됩니까?</p> <p>⑦ 2020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이 1채입니까?</p> <p>⑧ 차입금 잔액을 일시상환하였는지의 여부와 대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해당 합니까?</p> <p>⑨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의 가격이 5억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5억원 이하입니까?</p>		



NO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5	교육비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국외유학비용 등과 관련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안내문 참고바람		
16	의료비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와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참고로 난임시술비와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는 국세청 자료에 지출내역이 나오지만 해당 내역인지 알 수 없고 안경구입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에 나올 예정이지만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7	기부금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중점확인 사항이니 주의바람. ※ 법인설립허가서와 소속증명서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함 ※ 참고로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람		
18	기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란에 공제받고자 하는 연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예:2020년) 관련 서류 제출바랍니다.		
19	2020년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가 있나요? ※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1년 5월에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바랍니다.		
20	연말정산 세액의 결과 징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분납하여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분납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2개월 분납도 가능하므로 2개월 분납을 원하는 경우 별도 표기바람)		

